

의안번호	2203655
의 퇴 인	한병도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7.
추계번호	24F356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환경친화적 자동차,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6,529.6억원, 2027년 9,674.3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조 4,128.3억원(연평균 8,042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: 3년간 총 7,579억원(연평균 2,526억원) 감소
 -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: 3년간 총 1조 3,560억원(연평균 4억원) 감소
 -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: 3년간 총 2,988억원(연평균 996억원) 감소
 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: 3년간 총 1.3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6조 제3항)	-1,939	-2,477	-3,163	-7,579	-2,526
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6조 제4항)	-3,594	-4,451	-5,515	-13,560	-4,520
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7조 제1항 및 제2항)	-996	-996	-996	-2,988	-996
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7조제3항)	-0.6	-0.4	-0.3	-1.3	-0.4
계	-6,529.6	-7,924.4	-9,674.3	-24,128.3	-8,042.4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 제3항 (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)	-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2	안 제66조 제4항 (전기·수소차에 대한 감면)	-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3	안 제67조제1항 (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)	-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4	안 제67조제2항 (경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차에 대한 감면)	- 경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5	안 제67조제3항 (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)	-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특례(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)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6조 제3항 (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66조 제4항 (전기·수소차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67조제1항 (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67조제2항 (경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차에 대한 감면)	○	
5	안 제67조제3항 (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 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
- (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) 국토교통부의 「자동차등록통계」 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참고하여, 향후 하이브리드 및 전기·수소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하고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유형별로 신규 자동차 등록 추이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다음 가정에 따라 향후 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
 - － (하이브리드 자동차) 2023년 신규등록 건수(39.2만대)를 기준으로, '21~'23년 연평균 증가율(27.7%)에 따라 향후 신규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－ (전기·수소 자동차) 2023년 신규등록 건수(16.7만대)를 기준으로, '21~'23년 연평균 증가율(23.9%)에 따라 향후 신규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요건¹⁾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기·수소 자동차는 전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,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5.8%(2023년 기준,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추정) 만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에도 해당 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,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은 한도(하이브리드 40만원, 전기·수소 140만원)를 적용받을 것을 전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 -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액 한도(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571만원 수준
 - 전기·수소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2,000만원 수준
- (안 제67조제1항 및 제2항)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경형승용자동차, 경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의 감소 및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, 최근 5년간 감면액의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996억원
- (안 제67조제3항)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건수는 2018년 2,176건에서 2022년 677건으로, 감면액은 2018년 3.9억원에서 2022년 1.3억원으로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감면건수 및 감면액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감소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자동차세 감면액 감소율: -24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·수소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)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한도는 다음과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

같이 변화해 옴

- 하이브리드 자동차: ('10년) 140만원 → ('20년) 90만원 → ('21년) 40만원
- 전기·수소 자동차: ('12년) 140만원 → ('17~'18년) 200만원 → ('19년) 140만원

□ (감면실적)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한도액 축소에 따라 2021년 725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, 2022년에는 913억원으로 증가
-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18년 567억원에서 2022년 2,502억원으로 증가

[표 2]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하이브리드 자동차	1,500	1,639	1,326	725	913
전기·수소 자동차	567	522	710	1,512	2,50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자동차 유형별 취득대수 및 감면대상 전망)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의 신규 취득대수 및 감면대상 수를 전망

-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, 향후 '21~'23년 연평균 증감률(27.7%)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신규로 취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75.8% 만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

[표 3]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: 2019-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21-'23년 연평균 증가율
등록건수	104,301	173,580	240,341	274,856	392,075	27.7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[표 4]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4-2029년

(단위: 대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하이브리드 자동차(A)	500,772	639,603	816,923	1,043,211	1,332,180	1,701,194
감면 대상 (A × 75.8%)	379,585	484,819	619,228	790,754	1,009,792	1,289,50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전기차·수소 자동차) 전기·수소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, 향후 '21~'23년 연평균 증감률(23.9%)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신규로 취득하는 전기·수소 자동차 100%가 감면대상이 된다고 가정

[표 5] 전기·수소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: 2019-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21-'23년 연평균 증감율
전기자동차	35,102	46,776	100,549	164,748	162,639	27.2
수소자동차	4,201	5,848	8,549	10,338	4,710	-25.8
계	39,303	52,624	109,098	175,086	167,349	23.9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[표 6] 전기차·수소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4-2029년

(단위: 대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전기·수소 자동차(A)	207,265	256,702	317,931	393,917	488,063	604,710
감면 대상 (A × 100%)	207,265	256,702	317,931	393,917	488,063	604,7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대상 전망치에 감면액 한도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일반적인 가격을 고려 시, 모든 자동차 취득에 대해 한도액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
 -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액 한도(40만원)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571만원 수준
 - 전기·수소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을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 2,000만원 수준

[표 7] 차량유형별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대, 억원)

		2025	2026	2027
하이브리드 자동차 (제66조 제3항)	감면 대상(A)	484,819	619,228	790,754
	감면액 (A×40만원)	1,939	2,477	3,163
전기·수소전기차 (제66조 제4항)	감면 대상(B)	256,702	317,931	393,917
	감면액 (B×140만원)	3,594	4,451	5,5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5,533억원, 2027년 8,678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조 1,139억원(연평균 7,04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하이브리드 자동차: 3년간 총 7,579억원(연평균 2,526억원) 감소
 - 전기·수소 자동차: 3년간 총 1조 3,560억원(연평균 4,520억원) 감소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6조 제3항)	-1,939	-2,477	-3,163	-7,579	-2,526
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6조 제4항)	-3,594	-4,451	-5,515	-13,560	-4,520
계	-5,533	-6,928	-8,678	-21,139	-7,046

나. 경형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(안 제67조제1항 및 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*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, 승합

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감면

※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·승합차 및 화물자동차

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(제67조제1항): 75만원
-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(제67조제2항): 100%

□ (감면실적) 감면액은 2018년 1,102억원에서 2021년 870억원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은 1,144억원으로 증가하였고,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은 996억원 수준

[표 9]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(제67조제1항 및 제2항) 실적: 2018~2022년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1,102	970	893	870	1,14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, 최근 5년간 감면액의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연평균 감면액: 996억원

(3) 추계결과

□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취득세는 2025년 948억원, 2029년 948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,988억원(연평균 94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7조제1항)	-996	-996	-996	-2,988	-996

다.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
(안 제67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3호에
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자
동차세를 부과함

○ 감면조건: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신규등록
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

○ 소형 일반버스에 대한 세율은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며, 영업용
25,000원, 비영업용 65,000원을 부과함

□ (감면실적) 감면건수는 2018년 2,176건에서 2022년 677건으로, 감면
액은 2018년 3.9억원에서 2022년 1.3억원으로 최근 5년간
(2018~2022년) 감면건수 및 감면액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

○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·신고된 차량만이 감면대상이므로,
기간이 경과할수록 기존 차량의 신조차 교체 등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
차량의 숫자가 감소하여 감면건수 및 감면액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

[표 11]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실적: 2018~2022년
(단위: 건,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건수	2,176	1,641	1,226	926	677
감면액	3.9	2.9	2.2	1.6	1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자동차세 감면액 감소율이 향후에도
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5년간 연평균 자동차세 감면액 감소율: -24.0%

(3) 추계결과

-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자동차세는 2025년 0.6억원, 2027년 0.4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.3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자동차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 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(안 제67조제3항)	-0.6	-0.4	-0.3	-1.3	-0.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